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& WELFARE	설명자료	자료배포일	7월 2일	매수	총 4 매
		설명일시	7월 2일		
	기초의료 보장팀	팀 장	전병왕	☎	02-2110-6234
		주무관	황영원		

의료급여제도 개선사항 설명자료

<추진배경>

□ 의료급여 비용의 지출급증으로 재정상황 악화

○ 총진료비가 '02년도 20,313억원에서 '06년도 39,251억원으로 4년 사이에 거의 2배 증가

※ 2006년도의 경우 국고, 지방비 3조 5천억원

○ 지출증가는 수급자 및 의료공급자의 **비용의식 부재**와 **엄격한 사후관리체계 미구축** 등도 주요 원인

※ 1종수급자 진료비 지출이 연령, 중증도 등을 보정한 후에도 건강보험보다 48% 높음

○ **'06.7월 의료급여 종합혁신대책을 수립**하여 추진

- 수요자, 공급자, 관리운영, 제도측면 대책 마련

<"수급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 위협" 주장에 대해>

□ 1종수급자 본인부담제 도입과 함께 진료비를 지원하는 건강생활유지비 지원

○ 7월부터 의료급여 **1종수급자가 진료비의 일부를 부담**하는 본인부담제가 시행되나 이는 **외래진료에 한정**하는 것이고, **입원진료시에는 본인부담이 없음**

- 1종수급자 중 상시적인 의료이용이 필요한 백혈병, 암, 만성 신부전, 혈우병, 파킨슨병, AIDS, 전신 홍반성 루프스, 궤양성 대장염 등 **107개 질환은 외래이용시에도 본인부담 없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용할 수 있음**

- **또한, 장기이식환자, 가정간호대상자는 물론 18세 미만, 임산부** 등도 본인부담이 없음

※ 희귀난치성질환자 등 본인부담 면제자는 **'07.7.1. 현재 27만 3,308명**(1종수급자의 26.3%)임

○ 본인부담제 도입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지원하는 **건강생활유지비 6,000원(연 7만 2천원)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연 48회, 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연 36회 이용**할 수 있는 수준임

※ 예 : 고혈압 환자가 의원을 1회 외래방문하고 30일분의 약을 처방, 조제를 받는다면 월(30일) 본인부담금은 1,500원임

○ 연간 진료비가 건강생활유지비(연 72천원)를 초과하는 경우는 **2006년도 기준으로 1종수급자(104만명)의 3%인 31천명 수준**으로 파악되고 있으며, 월(6천원)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224천명(21.4%) 수준임

□ 진료비가 많이 발생하는 **1종수급자는 선택병의원을 활용한다면 본인부담 없이 병의원, 약국을 이용**할 수 있음

○ **한, 두 상병**으로 의료기관을 자주 방문하는 수급자는 급여일수 초과 전에 자발적으로 선택병의원을 정하는 경우, 그 선택병의원에서는 횟수에 관계없이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,

○ **복합질환**으로 선택병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다른 의원이나 병원(종합병원 포함)을 **추가로 선택**하여 본인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음

※ 선택병의원은 거주지 변경, 선택병의원에서 진료 불가능한 질환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변경가능

○ 아울러, **보건소도 본인부담 없이 이용**할 수 있음

○ **선택병의원 자발적 참여자는 7.1 현재 910명이 신청**하여 등록됨

□ 아울러 갑작스러운 질환으로 치료비가 많이 발생한 경우에는 **긴급지원제도**에서 의료비를 300만원까지 지원해드림

※ 06년 긴급지원사업 중 의료지원으로 14,234명에게 207억원 지원

<"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" 에 대해>

□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은 **급여일수의 실시간 관리**를 통해 여러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**중복투약을 예방**하여 **수급자의 건강을 증진**하고, **불필요한 누수요인을 최소화**하여 의료급여 재정집행의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한 것임

○ 1종수급자 외래진료시 본인부담제,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및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라 자격관리시스템S/W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에서 수급자 진료전에 **본인부담면제자 여부, 선택병의원 여부,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등의 정보를 제공**하여 의료급여기관의 행정처리에 편의를 제공

○ 의료기관, 약국에서는 진료후 주상병명, 급여일수, 본인부담금 차감액, 처방전 교부번호 등을 건강보험공단의 자격관리 시스템에 전송하면,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됨

□ 의료기관, 약국에서 진료확인번호 없이 진료비를 심사청구하는 경우에 **심사평가원에서 반송처리**되어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음

※ 진료확인번호는 자격관리시스템의 건보공단 포털, 콜센터 상담원, ARS 등을 통해서도 처리 가능

○ 다만, 7월 진료건에 대해서는 7월 중에 진료확인번호를 받아서 심사청구하여야 함

○ 7.2. 현재 자격관리시스템 S/W보급은 전체 75,756개 의료급여기관 중 5만 7천개(75%)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되며, 이 중 **4만개 기관에서 자격관리시스템에 접속**한 것으로 파악됨

○ **7월 중에 의료기관에 S/W가 확산되지 않을 경우** 확산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을 것임